

<p>佛光洞 양개부락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紹介議員인 黃炳五議員께서 철회하겠다고 지금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부결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철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p> <p>(「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청원 접수번호 54번, 봉천 2-2 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시유지 매입신청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p>	<p>시기 바랍니다. 방금 많은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p> <p>○李成浩委員 청원채택을 하자고 제가 정식으로 動議하겠습니다.</p> <p>○委員長 金淵柱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本會議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	--

청 원 요 지 서

접 수 번 호	54	접수년월일	1996.12.16
청 원 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2동 40번지 94호	
	성명	엄한섭 외 6인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김수복 의원		
건 명	봉천2-2재개발조합의 관악로·산복도로 건설개선과 시유지매입신청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도시정비위원회		
□청원 경위 및 내용			
○관악구 봉천 제2-2 재개발구역은 1965년도 서울지역 수재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994.2.24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는바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관악로확장공사 구간중 재개발지역 통과구간(폭 20m, 길이 304m)과 신설도로인 산복도로 공사구간 중 재개발지역 통과구간(폭 20m, 길이 244m)을 재개발조합에서 공사완료하여 서울시 및 관악구에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있으나			
○도로개설에 드는 비용이 서민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서울시 도로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폭 20m이상의 도로는 서울시에서 20m이하의 자치구에서 소유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관악구간은 서울시에서 산복도로구간은 관악구청에서 시공함이 마땅하며			
○재개발구역 중 학교부지 및 공원부지를 제외한 시유지는 5~10년 분납조건으로 매입 추진중에 있으나, 학교부지 및 공원부지내의 조합원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비점유지 5,330㎡에 대하여는 일시불 상환토록 하여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국유재산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10년간 분할 납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임			